

202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일시	2022년 5월 11일(수) / 15:00 ~ 16:00				
회의장소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				
회의안건	1.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회의참석	운영위원				
	연번	직위	성명	참석여부	
				참석	불참
	1	위원장	하소연	○	
	2	위 원	배의식	○	
	3	위 원	권미선	○	
	4	위 원	이정주	○	
	5	위 원	박미숙	○	
	계	5명			
	참관				
	이소영(직원 1명)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2022년 5월 11일 오후 15:00 하소연 위원장의 개회선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다.)

위원장 하소연: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서면 심의로만 진행하다, 이번 2차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운영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1)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에 대한 보고와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의 건에 대한 심의입니다.

위원장 하소연: (미리 배부된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제 2차 운영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보고입니다.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의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 대비 1.70% 증가한 247,755,000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확정 전년도이월금의 증액에 따른 이월금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직원의 중식 급식업체 미이용에 따른 직원식재료비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2022년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방역활동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잡수입의 수입 증가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직원 급식업체 미이용에 따른 생계비 지출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나 직원 호봉승급으로 인건비 지출 증가에 따른 사무비의 지출이 증가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방역활동 지원에 따른 잡지출의 증가로 세출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위 원 이정주: 코로나19로 그 동안 센터 직원들을 비롯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한시적이지만 지원이 되어 다행입니다. 한시적 방역활동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며 그 외 다른 외부 지원은 없습니까?

위원장 하소연: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및 수급자 검체 채취(PCR검사) 지원금과 신속항원검사 지원금, 입소형 시설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및 시설 감염관리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사자 감염예방수당의 경우 그 동안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준 직원들의 돌봄 노고에 격려하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시설 감염관리료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초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동래구청과 보건소에서도 이용자 및 종사자를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해주어 키트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 원 전 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소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의 건에 대한 심의입니다.

위원장 하소연: (미리 배부된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면접위원회 정족수 기준 명문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운영규정 중 취업규정(일반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채용절차(면접위원회 정족수 기준 명문화),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리), 가족돌봄휴직 등(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리), 경조사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리),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3조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관련 표준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원 배의식: 실제 사안이 발생할 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도 실효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직원이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소연: 예. 규정에 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직원들이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 원 박미숙: 없습니다.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 원 전 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하소연: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1)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2)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오후 16:00 하소연 위원장의 폐회선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를 폐회하다.)